

연간 방문객 **120만명**, 외국인 관광객 **30%**의 핫플레이스
DDP 쇼룸에서 전세계 소비자에게 귀사의 혁신을 선보이세요!

「2025년 DDP 쇼룸 패션 테크기업 PoC 지원(3차)」 모집공고

서울을 대표하는 패션 테크기업 발굴 및 기술 실증을 통해 패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, DDP 쇼룸을 시민들이 첨단 패션 기술을 체험하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2025년 9월 3일

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

1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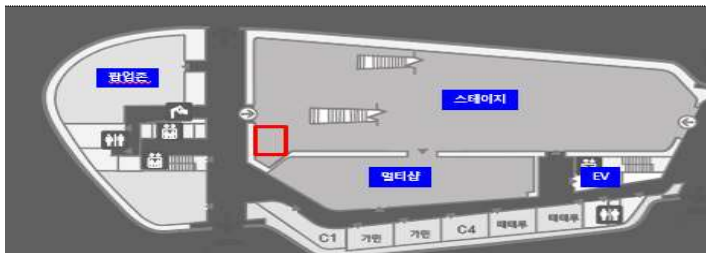
□ 사업명: 2025년 DDP 쇼룸 패션 테크기업 PoC 지원(3차)

□ 지원대상: 서울의 첨단 패션·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'AI 기반' 첨단기술을 보유한 서울소재 중소기업

- ◆ 기술예시: 패션 가상 핏팅 AI, 생성형 AI 기반 개인화된 룩북 제작, 상품 상세 페이지 AI 제작 기술 등
- ※ 실증 기회 제공을 바탕으로 산업 내 실제 적용 및 서울시 지원사업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기술 선정

□ 지원내용: 패션·라이프스타일 테크 실증공간 및 기술검증 지원

※ 실증공간은 DDP 쇼룸 스테이지(1층), 샘플스토어(2층) 활용으로 제안 가능하며, SBA와 협의 후 확정



DDP 쇼룸 1층 스테이지

[설치 안내-스테이지 사용시]

- 스테이지는 다양한 전시 이벤트가 개최되는 공간으로, 전시공간 활용 계획에 따라 위치 변경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'이동 가능형'으로 우측 지정 공간 내 활용
- 위치: 스테이지 우측 계단 앞(빨간 박스)
- 사이즈: 946cm*616cm 이내



DDP 쇼룸 2층 샘플스토어

[설치 안내-샘플스토어 사용시]

- 샘플스토어는 동대문 도매브랜드 전시를 위한 28개의 개별부스가 설치된 공간
- 해당 공간 활용 제안 시, 동대문 도매 브랜드와 연계할 수 있는 기술 참여 추천

지원규모: 3개사 / 기술검증 비용 기업당 최대 3천만원

(참여기업 1:1 민간부담금 출자 필수)

지원기간: 6개월(지원기간 내 테크 체험 콘텐츠 1회 이상 변경 필수)

○ SBA-선정기업 간 협의를 통해 연중 PoC 운영기간 확정

추진방법: 민간사업지원형 민간협력사업 통한 패션테크 전시·체험공간 조성

S B A	참여기업
전시·체험공간 및 PoC 사업비 지원 ① (기업관리)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 ② (자원지원) 기술 실증 공간 및 사업비 지원 ③ (공간운영) PoC 전시공간 운영인력 배치 ※ 참여기업 상주인원 배치 불가	패션테크 기술개발 및 전시·홍보 ① (기술개발) 첨단기술 개발 및 체험부스 조성 ② (부스홍보) 이용자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 등 ③ (성과창출) 실증 결과를 통한 추진성과 공유

추진절차 및 일정(안) (* 대내·외 환경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)

추진일정	추진절차	비고
9.3(수)~9.22(월)	참여기업 공개모집	
9. 25.(목)~9. 30.(화)	선정평가위원회 개최	서류(1차)→발표(2차)
10.1.(수)	선정 결과 발표	
10.2.(수)~10.17.(금)	기획 협의 및 협약체결	추석 기간 포함
'25.11 ~'26.4월(6개월)	PoC 조성 및 운영	운영기간 협의
'26.5~6월	정산 및 결과보고	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

2

모집개요

모집기간: 2025. 9. 3.(수)~ 9. 22.(월) 16:00

모집규모: 3개사 / 기술검증 비용 기업당 최대 3천만원

참여조건: 민간부담금(현물 또는 현금, 지원금의 100% 이상) 출자 의무

모집대상: 패션·라이프스타일분야 첨단기술(AI 기술 기반)을 보유한
서울소재 중소기업

✦ 신청자격(모두 해당)

-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
- ② DDP 소룸 내 실증 가능한 패션·뷰티·라이프스타일 분야 첨단기술(AI기반)을 보유한 기업
- ③ 지원금에 상응하는 규모의 현물 또는 현금 등 직접투자가 가능한 기업

✦ 제외대상

- ①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
- ②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
 - ▶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 - ▶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 - ▶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
 - ▶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
 - ▶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

모집방식: 공개모집

신청방법: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✦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

- ①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sba.seoul.kr/>) 기업회원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② [사업신청] > '2025년 DDP 소름 패션 테크기업 PoC 지원(3차) 모집공고' 클릭
- ③ 게시글 하단의 **[신청하기]** 버튼 클릭
- ④ 게시글에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 - ▶ 용량 30MB 제한, zip파일로 업로드, 제출 파일명 '신청서_기업명.zip'으로 통일
- ⑤ 최종 확인 후 하단의 **[제출]** 버튼 클릭

제출서류 목록

연번	제출서류
1	사업신청서 및 별첨서류 일체(양식1)
2	기술 실증 계획서(양식2)
3	사업자등록증
4	법인등기부등본
5	중소기업확인서(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)
6	전년도 재무상태표
7	전년도 손익계산서
8	국세 완납증명서(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)
9	지방세 완납증명서(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)
10	(요청시)기술 실증 계획서 내용증빙 및 참고자료

3

선정평가위원회 개최

평가기간: 2025. 9. 25.(목) ~ 9.30.(화) (* 일정 확정 후 별도 안내)

평가절차: (1차) 서류평가 → (2차) 발표평가

※ 신청기업수가 공고 규모의 2배수 이하인 경우, ‘(1차) 서류평가’ 단계를 생략할 수 있음

평가위원: 산업분야(패션·라이프스타일) 및 경영·기술·전시 외부 전문가 7인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

[서류평가] 제출한 기술 실증 계획서 서면 검토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

○ 선정기준: 평가결과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

※ 서류 평가 추진시, 발표평가 대상은 개별 연락(이메일 또는 유선) 예정

○ 평가항목 및 배점 (*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구 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														
정량 (10)	기업 경영상태 (5)	- 기업 전년도 매출액(매출실적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 <td>70억 이상</td> <td>40억 이상</td> <td>10억 이상</td> <td>10억 미만</td> </tr> <tr> <td>배점</td> <td>5</td> <td>4.5</td> <td>4</td> <td>3.5</td> </tr> </table> <p>※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점수 부여</p>	구분	70억 이상	40억 이상	10억 이상	10억 미만	배점	5	4.5	4	3.5	5					
	구분	70억 이상	40억 이상	10억 이상	10억 미만													
배점	5	4.5	4	3.5														
	기업 건정성 (5)	- 기업 전년도 부채비율(타인자본/자기자본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 <td>100% 미만</td> <td>200% 미만</td> <td>300% 미만</td> <td>30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100% 이상</td> <td>200% 이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배점</td> <td>5</td> <td>4.5</td> <td>4</td> <td>3.5</td> </tr> </table> <p>※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점수 부여</p>	구분	100% 미만	200% 미만	300% 미만	300% 이상			100% 이상	200% 이상		배점	5	4.5	4	3.5	5
구분	100% 미만	200% 미만	300% 미만	300% 이상														
		100% 이상	200% 이상															
배점	5	4.5	4	3.5														
정성 (90)	사업 역량 (30)	- 사업 목표와 실증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	10															
		- 사업 목적이 DDP 소류의 공간 특성·비전에 부합하는가	10															
		- 사업비 규모와 세부 예산항목·비용은 적정한가	10															
	기업 역량 (20)	-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	10															
		-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	10															
기술 역량 (20)	-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인가	10																
	- 사업기간 내 실증 가능한 완성도 있는 기술인가	10																
협업 역량 (20)	- 협업 가능한 우수 브랜드·IP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	10																
	- 브랜드·IP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제작 계획이 있는가	10																
총 계			100															

[발표평가] 기술 실증 계획서 기반 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

○ 선정기준: 평가결과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

※ 신청기업이 진행 도중 지원을 포기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대상 선정

○ 평가항목 및 배점 (※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구 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
정성 (100)	사업 역량 (30)	- 사업 목표와 실증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	10
		- 사업 목적이 DDP 쇼룸의 공간 특성·비전에 부합하는가	10
		- 향후 몇 년 이내 실증을 통한 사업화 성과가 기대되는가	10
	기업 역량 (25)	-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	10
		- 향후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만한 요소를 갖추었는가	10
		-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·PM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되는가	5
	기술 역량 (25)	- 타 기업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인가	10
		- 사업기간 내 실증 가능한 완성도 있는 기술인가	10
		- 사업화를 통해 확장 가능한 기술인가	5
	협업 역량 (20)	- 협업 가능한 우수 브랜드·IP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	10
		- 브랜드·IP 협업을 통한 실증 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	10
	총 계		

□ 결과발표: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 안내 및 SBA 홈페이지 공고 예정

4

선정 후 절차

□ 기획 협의 및 협약체결

- [기획협의] 실증기간·공간 확정 및 톤앤매너 유지를 위한 세부 시공계획 협의
- [협약체결] 협약기간, 상호간 역할, 사업비 지급, 정산 등에 관한 협약 체결
- [지원금 지급] 협약체결 후 지원금 (기업당 최대 3천만원) 지급
 - ‘별첨. 사업비 항목 및 사용기준’ 에 따라 집행

□ PoC 공간 조성 및 운영

공간 조성	· 기술 시연을 위한 공간 조성 필요시, 스테이지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가변형으로 DDP 쇼룸과 톤앤매너를 맞추어 조성 - DDP 쇼룸내 공간 활용시 해당 공간의 목적·타겟에 맞게 SBA와 사전 협의 후 확정 ※ 시민안전 및 사고사례 발생 시 대응 위한 행사보험 필수 가입(협약기간 종료 후 30일까지)
공간 운영	· DDP쇼룸 내 상주인력 SBA 직접배치(참여기업 인력 배치 불가) · 개별 미팅을 통한 신규 콘텐츠 발굴(1회 이상 변경 필수) · 참여기업이 실증기술과 연계된 상품·서비스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SBA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, 판매대금의 20%를 SBA에 수수료로 지급함

정산 및 결과보고

- [사업비 정산] SBA 지정 공인회계법인 통해 사업비 정산 및 잔액·이자 반납
- [결과보고]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제출 및 성과 홍보 추진

5

유의사항

- 선정기업은 협약시 서울경제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SBA는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중대재해처벌법」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시민안전 및 사고사례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간은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까지로 함
-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본 사업의 선정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
- SBA와 선정기업이 체결한 사업의 내용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

6

문의처

- 서울경제진흥원 패션기업육성팀(02-6951-2578, leeyr35@sba.seoul.kr)

별첨

사업비 항목 및 사용기준

□ 사업비 항목 및 사용기준

구분	비목	세목	사용기준
인건비	인건비		-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참여율 반영 ※ 총 지원금의 20% 이내
직접비	개발비	디자인	- 부스 디자인, UI/UX 개발 등
		S/W	- 실증 기술 개발, 콘텐츠 변경 등
	시공비	H/W	- 사업기간 중 렌탈료(구매·제작하는 경우 총 내구연한 중 사업기간 비율을 산정하여 계상 가능) 등
		제작비	- 전시 부스 제작, 인테리어 등
	사업 활동비	제경비	- 행사보험료(필수가입), 이행보증보험증권, 회계정산수수료 등
		홍보비	- 본 사업과 연계한 온·오프라인 행사, 광고 등
기타 활동비		- 회의비, 추진비 등 - 설명회, 기업 네트워크 행사 등	
간접비	기타운영비		- PoC 사업과 관련된 간접비용(기관 공통경비 등) ※ 총 지원금의 10% 이내

□ ‘민간부담금’ 계상기준

- ‘민간부담금’은 인건비만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, 선정기업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현물 또는 현금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.
- ‘민간부담금’ 중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하며, 참여하는 인력의 참여율은 타 사업과 합산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‘민간부담금’ 중 장비, 부동산 등을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 선정기업이 본 사업 참여 전부터 소유·임차·사용대차하고 있는 장비·부동산의 구입가 20% 내에서 계상 가능하며, 사업 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. 컴퓨터, 워크스테이션 등 범용성 장비는 계상할 수 없다.
- ‘민간부담금’ 중 별도의 계상기준이 없는 무형적 자산의 경우 시장조사를 통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, 검토 결과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.

★ [참고]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

<별표 2>

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
(2025년 기준)

등 급	월 임금
책임연구원	월 3,705,904원
연구원	월 2,841,638원
연구보조원	월 1,899,539원
보조원	월 1,424,702원

주 1)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.
 주 2)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,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“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”(통계청 발표)을 반영하여 산정한다.

사업비 지급 및 사용

- 사업비 집행의 책임은 선정기업에 있다.
- 선정기업은 별도의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하며, 해당 통장을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선정기업은 협약시 서울경제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- 선정기업의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, 협약기관의 다른 통장으로 지출한 이후 증빙을 통해 현물로 인정받아야 한다.

사업비 정산

- 사업종료시 선정기업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SBA 지정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전용통장의 이체내역과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정산은 선정기업이 현물로 계상한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선정기업에서 정산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.

- 선정기업이 제출한 정산내역 중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되지 않을 시 불인정할 수 있다.
- 선정기업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개별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여 정산한다.
- 선정기업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무형적 자산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정산을 갈음하고,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불인정할 수 있다.
- 선정기업은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집행 이전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.
-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집행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비영리기관, 해외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- 선정기업이 활동비 및 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민간협력사업의 수행 연관성을 소명하여야 하며,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할 수 있다.